

카자흐스탄의 유전개발관련 프로젝트시 유의사항: 석유개발회사의 인수 거래 사례를 중심으로

이진환 변호사* · 황광연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1. 서 문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부쩍 성장했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특히 국내 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업무에 조력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과거 해외 진출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회사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자로서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프로젝트의 다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프로젝트의 수익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투자 형태의 다양화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축적한 기술과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에 조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변호사로서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은 위와 같은 해외진출 흐름의 최선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세계적인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사들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회사들 역시 독자적으로 또는 위 공사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 발표문은 발표자들이 우리나라 법인을 대리하여 카자흐스탄의 석유개발회사를 인수하는 거래를 수행하면서 습득하게 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법제의 소개나 분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부딪혔던 실무적인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법들, 성공적인 거래의 종결을 위하여 유의해야 할 점들을 소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여러 광물자원 중 거래의 목적이 된 석유자원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실제 거래 시에 발생하는 구체적인 의문점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률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이 글에서 논하는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김·장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다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 카자흐스탄의 일반사항

2-1. 국가 현황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272만 4900제곱 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면적은 세계 9위로서 서유럽 전체 면적과 비슷한 크기다. 카자흐스탄은 북쪽으로 러시아, 서쪽으로는 카스피해, 남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접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대략 1530만 명이며 가장 큰 도시인 알마티에는 약 120만 명이 살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지구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 중의 하나이며 1 제곱 킬로미터 당 5명이 거주한다.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카자흐 민족이며 25.6%가 러시아 민족이다.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아스타나(Astana)이다. 1997년 수도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알마티(Almaty)가 수도였으며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알마티가 전통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우리나라 회사를 비롯한 상당수의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사무소도 알마티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카자흐스탄 지역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초원을 떠돌던 유목민들이었으며, 후에 러시아 제국에 흡수되었다. 그 후 러시아의 10월 혁명을 거쳐 소비에트 연방의 연방국가가 되었으며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1991년 12월 16일에 독립하였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 속하였다가 독립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로서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절 카자흐스탄 지역 공산당 서기장이었다. 나자르바예프는 카자흐스탄의 독립 이후 초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다. 과거 카자흐스탄 헌법상 연임 제한 조항이 있었으나 2007년 개헌을 통하여 그 제한을 철폐하였다. 나자르바예프는 2012년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것이 유력하다. 카자흐스탄은 여타 중앙 아시아 국가들보다 국내 정세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입법부는 양원제이며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상원의원은 수도와 주요 도시에서 선출되며 대통령이 15명의 상원의원을 직접 임명할 수 있다.

2-2. 경제와 자원

2008년 7월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카자흐스탄에 약 761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으로 유입되었다. 독립과 동시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에 필요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고 민영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992년부터 계속 진행되어온 경제개혁으로 국가의 시장개입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 다만, 민간기업들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개입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¹⁾

카자흐스탄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원유매장량 세계 7위, 아연, 텅스텐은 매장량 세계 1위, 우라늄, 은, 크롬 매장량 세계 2위, 구리, 망간 매장량은 세계 3위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농업과 축산업으로도 상당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밀 생산지이다. 풍부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내륙국가의 특성상 운송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1996년에 제정된 카자흐스탄 경제특구법령은 특정지역 내에서 특정 유형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스타나 경제특구, 아크타우 경제특구 등을 두고 있으며, 경제특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재산세, 토지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법인세는 계속 인하되는 추세여서 현재 17.5%이며, 2011년에는 15%까지 인하될 예정이다.²⁾ 부가가치세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09년 이후 12% 수준이다.

2-3. 투자 형태

카자흐스탄의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연락사무소 및 지사로 크게 나뉘어 지며 주식회사와 지사 형태가 외국회사의 가장 많은 기업형태로 알려지고 있다.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The PRS Group Inc, Kazakhstan Country Conditions Climate for Investment & Trade, Pg 1 2009

2) The PRS Group Inc, Kazakhstan Country Report, Pg 43 2009

형 태	설립 절차 / 특징
유한책임회사	법무부에 등록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정관, 해당 외국기업의 법인 등기부등본, 설립결의서, 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주식회사	설립절차는 유한책임회사와 동일하며, 다만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에 주식 발행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연락사무소	등록신청서, 설립 결의서, 연락사무소에 관한 사규, 모기업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연락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증명서, 등록비 지급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방 법무국에 제출하여 등록함.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업활동이 금지되며, 현지 기업과 모기업 간의 중간 역할 및 모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역할만 허용됨
지사	등록신청서, 설립 결의서, 연락사무소에 관한 사규, 모기업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연락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증명서, 등록비 지급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방 법무국에 제출하여 등록함.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업활동이 금지되며, 현지 기업과 모기업 간의 중간 역할 및 모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역할만 허용됨

2-4. 부동산 등기제도 및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동산등기제도가 존재한다. 등기되어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투자대상 자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는 제3자에게도 공개된다.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방법으로서 저당권 및 근저당권 설정이 허용된다. 저당권을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등기소에 등기하면 이후 파산절차에서 특정 우선채권자는 제외하고 저당권설정자의 제3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외국인도 적법하게 저당권을 설정 받고 실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제한은 없다.

2-5. 주식 및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

주식 및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도 허용되며, 질권 설정 사실을 주식발행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지분소유자 명부에 등록하거나 예금질권설정계약서를 근거로 등기소에 등기를 마쳐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심토 이용권 (Subsoil Use Right)

카자흐스탄 헌법상 토지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는 국가의 독점 소유이며 석유의 탐사 및 채굴을 위해서는 Subsoil Law³⁾에 따라 국가로부터 심토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 Subsoil Law에 따르면 심토(Subsoil)는 표토 아래의 지층으로서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한 깊이까지의 범위를 포함한다. 심토의 이용에는 심토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채광을 위한 지질학적 탐사, 채광 작업 및 채광된 자원을 저장하기 위한 지하시설의 건설활동이 포함된다. Subsoil Law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외국인과 외국법인도 카자흐스탄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1. 심토 이용권의 취득

과거에는 심토 이용권에 관한 허가제와 계약제가 병존하고 있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허가제는 폐지되고 정부기관인 Ministry of Oil and Gas (“MOGMOG”)⁴⁾와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권을 부여 받게 된다. 다만, 허가제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심토 이용권의 취득, 이전 과정에 정부가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Subsoil Law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용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MOG는 이용권자를 결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입찰자의 재무상황, 기술, 경영적 측면들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낙찰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개월 이내에 낙찰자는 이용계약 초안을 작성하여 MOG에 제출해야 하며 MOG는 이를 관계부처에 회람하여 검토를 요청한 후 다른 이견이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내용은 입찰 절차에서 제출한 제안서보다 정부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

심토 이용권은 Act of State Registration에 의하여 등록되어야만 유효하며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적법하게 심토 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토 이용권 보유 회사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증을 제시 받아 적법하게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이용권자가 입찰 절차에서 제출한 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관련 공무원과 유착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3) The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s of January 27, 1996 No. 2828 on Subsoil and Subsoil Use

4) 종전에는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가 주관부처 이었으나 2010. 3.경 카자흐스탄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되고 Ministry of Oil and Gas가 Subsoil Use Right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2. 심토 이용계약의 종류

심토 이용계약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탐사계약(contract for exploration)과 상업적 발견 이후 실제 채광작업을 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채광계약(contract for production)으로 구별된다.

탐사계약은 최장 6년까지 유효기간을 가지며 심토 이용자는 2 차례에 걸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갱신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일단 광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용권자가 그것이 상업적 발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채광계약은 탐사 결과 상업적 발견(commercial discovery)이 이루어진 경우에 MOG과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최장 25년까지 유효기간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매장량이 특별히 많은 경우에는 45년까지도 가능하며 갱신이 허용된다. 탐사계약의 갱신 신청은 탐사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채광계약의 갱신 신청은 채광계약 만료일 12개월 이전까지 해야 한다. 갱신 여부는 MOG의 재량이며, 이용 계약상의 의무 위반, 법령 위반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 거부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탐사계약을 체결한 자가 상업적 발견에 성공한 경우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MOG와 수익계약 방식으로 채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현지 법률자문사의 자문에 따르면 MOG가 이에 구속되어 반드시 채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나,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경우 채광계약이 거부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3. 심토 이용계약의 내용

심토 이용계약에는 통상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이용권이 부여되는 지역, 당사자들의 의무에 관한 사항, Work Program의 작성 및 준수에 관한 사항, 이용권자의 보고의무, 재원조달, 조세, 수수료, 회계에 관한 사항,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관한 사항, 심토 및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권리와 의무의 이전에 관한 사항, 분쟁 발생시 해결절차, 이용권의 중단 및 해지 사유 등이 규정된다. 법률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법률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이용계약에는 이용권 부여를 위한 입찰절차에서 이용권자가 낙찰되었음을 확인하는 MOG의 결정, 이용권자가 제출한 입찰제안서가 첨부된다.

Subsoil Law에서 규정하는 심토 이용자의 의무사항에 더하여 개별 이용계약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용계약에서는 카자흐스탄 국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거나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된 장비,

자재를 의무적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기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탐사계약의 경우 일정 기간까지 상업적 발견(Commercial Discovery)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부 광구를 반납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이용자는 이용계약 기간 동안 매년 이행해야 할 작업량에 관한 Work Program을 작성하여 MOG로부터 승인 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도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연도부터는 12월 30일 이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토 및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MOG는 그 판단에 의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MOG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Work Program의 수정이 가능하다.

Work Program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Work Program을 100%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당 부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용계약이 해지 당할 위험이 높지 않다고 한다. 2008년 하반기 리먼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이용권자들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거치면서 Work Program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이유로 이용권이 해지된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한다.

3-4. 심토 이용권의 이전

이용권자가 심토 이용권을 이전하는 경우 사전에 MOG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부/일부 이전, 유상/무상 이전을 불문한다. 또한, 이용권 그 자체를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모회사의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실제적인 이용권의 향유 주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MOG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전 거래의 범위를 넓게 규정한 이유는 심토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법인의 모회사를 제3국(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해 두고 그 모회사의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실질적인 심토 이용권의 주체를 변경하는 편법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심토 이용권 자체를 직접 이전하거나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이용권 또는 이전 대상 지분에 대한 우선 매수권 포기(Waiver)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선 매수권 포기를 받아야 하는 거래 형태에는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모회사의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실제적인 이용권의 향유 주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가 포함된다. 우선 매수권 포기는 관계기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며 동 위원회가 MOG에 그 결정사항을 건의하면 MOG이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우선 매수권 포기에 관한 공문을 발행한다.

심토 이용권을 이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 관한 사항과 양도거래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우선 매수권 포기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기재 사실에 허위가 있는 등 우선 매수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 포기의 효력이 상실되어 심토 이용권 이전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심토 이용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양도인이 MOG로부터 적법 유효한 동의 및 우선 매수권 포기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Condition Precedent)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5. 심토 이용계약의 해지

Subsoil Law에서는 (i) 이용권자가 이용계약에 규정된 사항 및 Work Program 을 위반한 경우, (ii) (i)의 위반을 치유하기 위하여 MOG이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iii) 이용을 일시 중단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치유하지 못한 경우, (iv) 이용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될 경우, (v) 국가의 우선 매수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MOG이 일방적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상의 해지 사유 외에도 이용계약에서는 개별적으로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양수인은 이용계약상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확인한 후 이용권자가 이를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이용권자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and Warranty)을 받아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3-6. 기 타

심토 이용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계약 및 담보제공 계약에서는 이용권의 이전 또는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전을 해지 사유로 규정하거나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양수인이 양도인이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사전에 금융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적절한 동의를 받거나 해지권 포기에 관한 확약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4. 환경 규제

카자흐스탄 법령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심토 이용권을 취득하여 탐사, 채광을 하려는 자 역시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카자흐스탄 법률에서는 심토 이용권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으로서 (1) 오염물질 배출총량 제한, (2) 환경 보전조치의 이행, (3) 환경 오염 모니터링 프로그램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오염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사전에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 분기별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법률상의 의무 외에도 개별 이용계약에서는 이용권을 부여 받은 지역에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권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용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반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사막화 방지, 비산 방지, 지하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하자원의 무분별한 훼손 방지를 위한 지질조사 등 의무를 규정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환경 규제사항들은 대부분 이용계약상 이용권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당국은 부여된 환경 관련 인허가를 일시 중지, 취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용권자의 탐사 또는 채광이 중단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5. Competition Law에 따른 기업결합 승인

Competition Law에서는 일정한 경제력 집중행위(economic concentration)에 대하여 Agency for Protection of Competition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행위는 (i) 거래 이전에 지분을 보유하지 않거나 2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던 자가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ii) 의사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모든 경제력 집중행위에 대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i)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 당사자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백만 MCI (Monthly Calculated Index)⁵⁾를 초과하거나, (ii)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관련 시장에서 독점 또는 시장

5)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로서 발표자들이 본건 거래를 수행할 당시 1 MCI = 1,300 KZT = 8.5 USD 수준이었다.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업결합 승인은 거래종결(closing) 이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당해 거래로 인하여 양수인의 독점적 지위가 창설 또는 강화되거나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업결합승인이 거부될 수 있으며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경쟁당국에서는 결합 회사들의 주주 구성, 매출액, 카자흐스탄 내 자산취득 현황 등을 고려한다고 한다. 실무적으로 기업결합 승인은 실제적인 검토 후에 경쟁제한성이 높다는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 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들의 미비 등을 이유로 거부된 사례들이 더 많다고 하며, 서류 미비를 이유로 거부된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결합 승인이 거부된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종결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만일 종결 이후에 승인 거부결정이 된 경우에는 경쟁당국의 명령에 따라 기존 주식 매매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 취득한 주식의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경제력 집중 행위에 대한 규제 외에 이른바 자연 독점 (Natural Monopoly) 산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기업결합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송유관을 통한 석유와 천연가스 운송 산업, 전기 에너지 유통 산업, 항공 운수 산업, 우편 사업자, 하수처리산업, TV 산업, 철도사업 등 자연독점 사업자의 지분을 10% 이상 인수하는 경우에는 Agency for Natural Monopolies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자연독점 사업자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지분의 수에 상관없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실제 거래 시 유의할 점

6-1. 심토 이용계약의 검토

심토 이용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MOG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는 방법과 기존 이용권자가 취득한 이용권을 이전 받는 방법이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로서 현지 사정에 정통하지 않은 우리나라 투자자는 후자를 선호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의 경우 비교적 적은 투자비용으로 탐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충분한 지질학적 조사와 탐사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상업적 발견에 이르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기존 이용권자의 탐사 데이터를 근거로 상업적 발견의 가능성이 높은 광구를 골라서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취득 가격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만일 후자와 같이 기존 이용권자로부터 이용권을 양도받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이용권자와 MOG 사이에 체결한 이용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다. 이용계약의 잔여기간, 갱신 가능성 및 해지 사유의 발생 유무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별히 부과된 의무사항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용권은 담보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담보제공 여하에 관하여도 확인해야 한다. 물론 이용권이 적법하게 등록되었는지도 당연히 확인해야 한다.

6-2. 이용권의 이전에 관한 MOG의 동의 및 우선 매수권 포기

이용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MOG의 동의 및 우선 매수권 포기(Waiver)를 받아야 하는바,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공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양도인이 동의나 우선 매수권 포기를 받기 위하여 MOG에 제출하는 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은닉한 경우에는 동의나 우선 매수권 포기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이 MOG에 제출한 신청서류까지 제출 받아 당해 거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식매매계약 서명 이전에 동의나 우선 매수권 포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규정해야 한다.

6-3. 기업결합 승인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래의 경우 Competition Law에 의한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의 경우 경쟁당국의 명령으로 취득 지분을 처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행정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취득 대상 회사의 과거의 지분거래 중 승인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 거래의 효력상실로 인하여 그 이후의 지분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6-4. 기존 주식거래의 적법성 확인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이전 받는 거래의 경우 위 2.항과 3.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과거의 지분 이전 거래 중 MOG로부터 동의와 우선 매수권 포기를 받아야 했거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거래가 있는 경우 이 거래에 대한 효력 상실로 그 이후의 지분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분쟁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취득 대상회사의 지분이 과거 수 차례에 걸쳐 이전되었던 경우에는 각 거래 별로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6-5. 주식이전 방식의 검토

카자흐스탄 증권거래소(Kazakhstan Stock Exchange)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 특정 당사자와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Private Deal 방식과 불특정 당사자와 주식을 거래하는 Open Deal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며 Open Deal 방식에도 그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Private Deal 방식보다 Open Deal 방식이 조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래의 형태 및 조건에 따라 거래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한국인이 대표로 있는 증권 중개사무소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7. 결 론

카자흐스탄은 세계적인 자원부국이면서도 중동, 아프리카, 남미 지역보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세가 안정되어 있는 곳인 만큼 투자 안정성이 비교적 높고 사후 운영/관리가 용이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자원개발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회사들이 이미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곳이며 이에 따라 한국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무쪼록 줄고가 카자흐스탄 지역에서의 자원개발 사업에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